

미디어혁신연구소 규정

시행일: 2023.02.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미디어혁신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고 한다)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연구소는 미디어 관련 제 분야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적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미디어 관련 제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조사
2. 미디어 기법의 연구 및 개발
3. 미디어 교재 개발 및 연구 성과물의 간행
4.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국내외 미디어 관련 연구 자료 및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
6. 각종 국내외 미디어 관련 대회 주최 및 주관

제4조(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조직)

① 본 연구소에 두는 조직은 각호와 같다.

1. 연구소장
2. 자문위원회
3. 운영위원회
4. 사무국
5. 교육팀
6. 연구팀
7. 영상팀

② 연구소 구성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「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다.

제6조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- ② 연구소장은 본교 재직 교원 중에서 연구소의 소관위원회의 심의 및 유관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특별연구원)

- ① 연구소장은 교내외 인사 중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②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정하는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8조(자문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인 내지 7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- 2. 조직
 - 3. 제 규정의 개폐
 - 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- 5. 연구소장 추천
 - 6. 연구원, 연구조원, 행정요원 등 임명
 - 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본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사무국)

- ①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사무국에는 교육팀, 연구팀, 영상팀을 둔다. 각 팀에는 1인의 팀장을 두며, 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장 재정 및 기타

제11조(재정)

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.

1. 교내외의 수탁 연구비
2.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
3. 기부금
4. 기타 수입금

제12조(회계연도)

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13조(감사)

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한다.

제14조(보칙)

본 규정 및 대학 제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